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03 ~ 37

제안년월일: 2003. 9. 18.

제안자: 김정희의원외 1인

■ 수정 이유

-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소장 5급이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아 삭제코자 함

■ 주요골자

-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직제를 삭제
- 거창사건담당업무를 행정과에 둠
- 부칙제2조 제1항을 삭제함
(2002. 11. 22 기 삭제)
- 별표 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거창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를 삭제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타목 다음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거창사건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제3절 제19조 내지 제21조를 삭제하고

제4절을 제3절로 하며 제22조 내지 제27조를 제19조 내지 제24조로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13항을 제1항 내지 제12항으로 한다

별표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중 거창군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란를 삭제한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 (실·과의 설치) ②. 3. 행정과장 가. ~ 타(생략) (신 설) 제3절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p> <p>제19조(설치) ①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예회복과 국민화합 민주화 위령사업, 묘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p> <p>제20조(소장)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를 삭제한다.</p> <p>제2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묘역관리 및 운영 2. 명예회복 및 유족회 지원 3. 방문객 안내 및 대외 홍보 4. 전시 자료 수집 및 관리 5. 위령제 및 추모식 운영 및 지원 6.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 7. 문화행사 기획 운영 8. 홍보 영상물 제작 9. 역사교육관, 위패보안소 관리 10. 묘역 조정 및 주변 임야 관리 11. 조경,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12. 기타 거창사건 관련 사항.</p> <p>제4절 제22조~ 제27조(조문 변경)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중 “종합사회복지관”을“문화센터”로,“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수도사업소 다음에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를 추가한다.</p> <p>부칙 제2조 제2항내지 제13항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거창군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p>	<p>제4조 (실·과의 설치) ②. 3. 행정과장 가. ~ 타(현행과 같음) 파. 거창사건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p> <p>제3절 (삭 제)</p> <p>제19조(설치) (삭 제)</p> <p>제20조(소장) (삭 제)</p> <p>제21조(소관사무) (삭 제)</p> <p>제3절 제19조~제24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삭 제)</p> <p>부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12항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삭 제)</p>